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 - 5
----------	--------

제출년월일 : 2018.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 행위의 제한 사항 중 애완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행위의 제한) 제1호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사항에 장애인 보조견 예외사항을 추가
 - 애완동물에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 명시
- 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7. 10. 26. ~ 2017. 11. 15. (의견제출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7.12.28.)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시설에 대하여는”을 “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제8조 중 “제7조의 시설 담당부서”를 “제7조에 따른 소관부서”로 한다.

제11조 중 “기관에 대하여”를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u></p> <p>6. <u>그 밖의 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u></p> <p>③ (생략)</p> <p>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p>	<p>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 ----- ----- ----- ----- 시설은 ----- ----- ----- -----</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행위의 제한) ----- ----- ----- ----- -----</p>

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노행위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2. ~ 5. (생략)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 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 -----
- 애완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 른 의료기관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주택단지

10. 그 밖에 담당업무 부서 지정 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 하게 한다.

제8조(관리 감독) 제7조의 시설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 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 관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야 한다.

제11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 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관리 감독) 제7조에 따른 소관부서-----

-----.

제11조(표창 등) -----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